

# 2023년 대덕구 배달강좌제 운영 매뉴얼

## 제1장 총 강

### 제1조(목적)

- ① 배달강좌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습을 배달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학습서비스로 "행복한 학습도시 대덕"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진행절차)

- ① 배달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.
- ② 학습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및 강좌신청 → 강좌선정 → 강좌실시 → 강좌평가 순으로 진행한다.
- ③ 강사의 경우에는 강좌배정 → 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→ 강좌실시 → 강좌 운영결과보고 및 평가 → 강사료 지급 순으로 진행한다.

## 제2장 배달강좌 기본운영

**제3조(강좌분류)** 배달강좌는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에 의한 표준 강좌를 기준으로 운영한다. (※ 6진 분류 : 기초문해, 학력보완, 직업능력, 문화예술, 인문교양, 시민참여)

### 제4조(강좌시간)

- ① 학습자 1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연 최대 3개 강좌까지만 가능하다.  
단, 강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강좌는 1강좌 당 최대 20시간으로 운영하되, 1주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 
단, 시설대관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이나 회계연도 내에 강좌를 종료해야 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

### 제5조(강좌장소)

- ① 강좌는 대덕구 관내에서 실시하되, 전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배달강좌 운영에 필요한 학습장소는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하며, 개인 및 공공장소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장소(기관)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강사의 사설근무지, 교습소, 학원 등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배달강좌 운영이 금지된다. 단, 강사의 근무지가 비영리법인, 공공시설인 경우 강좌운영 가능하며, 전문기술관련 교육 등 교육 운영에 필수적인 기자재, 시설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.

- ④ 학습장소에서의 교육활동 가능 여부는 해당 장소를 관리, 감독하는 규정 및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따른다.
- ⑤ 종교시설 및 특정 정당 사무실 등을 학습장소로 사용할 경우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종교 및 정치 이념에 일체 관여 하여서는 안 되며, 연령제한이 있는 유흥시설, 사행성 관련 등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강좌를 운영할 수 없다.
- ⑥ 강좌운영 시에는 반드시 "배달강좌 운영 중"임을 알리는 표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학습자

### 제6조(신청자격)

- ①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배달강좌를 신청한다.
- ② 학습자는 1팀당 3인 이상(단, 전염병관련 거리두기 인원적용 시 학습가능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)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학습자의 과반수 이상은 대덕구민 이어야 한다.
- ③ 학습자 대표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득한 후 반드시 학습자 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강좌 운영에 관해 강사 및 담당 부서와 소통한다.
- ④ 배달강좌 신청 가능 인원 구성을 위해 팀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하거나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강좌를 신청한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강좌의 신청은 취소된다.
- ⑤ 강좌에 따라 대덕구 생활권자(대덕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, 기관,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)는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수강료 및 재료비)

- ① 배달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.  
단,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수강료 등을 지정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강사와 학습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8조(강좌신청)

- ① 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강좌 종료 시 학습자 대표는 반드시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.【별표1】

### 제9조(강좌신청 제한)

- ① 학습자는 정규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좌 내용에 관한 교육을 강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.
- ② 학습 특성상 전용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, 학습자 1인당 1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.

## 제4장 배달강사

### 제10조(강사 등록)

- ① 강사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강사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최종 선정된 자를 말하며 강사 모집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- ② 강사의 지원 가능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하며 지원 조건은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하되, 모집공고 시 필요에 따라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.  
단, 자격조건의 강의 경력은 관련분야에 한하며,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로 한정한다.
  1. 교육법에 의한 해당 분야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  2. 대학(4년제) 및 전문대학(2년 또는 3년)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
  3. 고등학교 졸업자로서,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3년 이상 강의 경력자
  4. 최종학력을 증빙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
  5. 대덕구 배달강사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평생학습 분야 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자
  6. 그 밖에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이 해당 분야의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아동,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개강 전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조회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강사 활동을 금지한다.
- ④ 강좌를 배정받은 강사는 대덕구에 강사위촉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경력증명서는 해당 강의 종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.

### 제11조(강좌 운영)

-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학습자와 최종 협의한 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, 대덕구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강좌일시, 학습장소, 학습인원 등 운영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홈페이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,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변경계획 승인 전 운영된 강의는 인정되지 않으며,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다.
- ④ 강사는 대덕구 평생학습팀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강의를 운영하여야 한다.

### 제12조(학습자 관리)

- ① 강사는 강좌 운영 시 학습자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학습자와 재료비 또는 교육내용 등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학습자에게 교육에 대한 대가로 추가의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
- ③ 강사는 강좌 운영 중 알게 된 학습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강사의 사적 이익(개인 교습 수강생모집, 판매 목적의 교재 구매 등) 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, 강사의 영리활동을 위한 학습 팀 형성 및 활동은 선정 및 강좌점검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.

### 제13조(강좌 종료)

강사는 강좌 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운영결과보고서(강의사진 · 자체평가)를 작성해야 하며, 강사료 청구서, 출석부, 통장 사본을 평생학습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4조(강사료)

- ① 기본 1시간은 40,000원, 초과시간은 30,000원으로 한다.
- ② 강사료는 운영계획서와 동일하게 운영된 강좌에 지급되며, 종강이나 폐강된 강좌의 경우, 최종 운영 승인된 회차까지만 지급한다.

### 제15조(강사 준수사항)

- ① 강사는 배달강사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좌에 임하여야 한다.
  - ② 강사는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배달강사 워크숍, 의무 직무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강사 활동에 제약을 둘 수 있다.
  - ③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, 강사 자격이 정지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필요시 유관기관과 공유한다.
  - ④ 강사 자격 정지는 1회 경고 후 재발 즉시 자격 정지되며, 다음 연도 1년간 대덕구 배달강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.
- ※ 강사규정 위반사항 : 장소, 시간, 운영 내용, 학습인원 임의 변경 등 대덕구에 사전 승인 없이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

## 제5장 강좌 선정, 강좌 배정 등

### 제16조(강좌 선정)

- ① 배달강좌 선정은 개설된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신청으로 선정된다.
- ② 배달강좌 운영 중 필요에 따라 추첨 등을 통하여 최종 운영 강좌를 선정할 수 있다.

### 제17조(강좌 배정)

- ① 강사가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강좌수는 월 최대 3개로 제한한다.  
단, 강사의 교육 참여 여부 및 학습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### **제18조(현장 모니터링)**

대덕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배달강좌 운영과 사후 만족도 관리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학습자 및 강사는 현장 모니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.

### **제19조(강좌 폐강)**

- ① 학습자와 강사의 상호 협의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강 할 수 있다.
- ② 강사 자격이 정지된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폐강한다.
- ③ 운영계획서와 상이하거나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.
- ④ 출석율이 50% 이하로 3회 초과되는 회차부터 자동으로 폐강한다
- ⑤ 그 외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
【별표1】

## 대덕구 배달강좌 만족도 설문지

배달강좌에 참여해주신 학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 
향후 배달강좌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오니 귀하의 의견을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1. 참여 강좌번호    20    -    -    \_\_\_\_\_
2. 참여자 성별    ① 남성    ② 여성
3. 참여자 연령대  
① 미취학 아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초등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청소년(중고생)  
④ 20대    ⑤ 30대    ⑥ 40대    ⑦ 50대    ⑧ 60대    ⑨ 70대 이상
4.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인가요?  
① 대덕구    ② 동구    ③ 중구    ④ 서구    ⑤ 유성구
5. 배달강좌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?  
① 홍보전단지    ② 홈페이지    ③ 대덕구 소식지    ④ 주위 소개    ⑤ SNS    ⑥ 기타
6. 배달강좌에 참여하면서 강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?  
① 매우 만족    ② 만족    ③ 보통    ④ 불만족    ⑤ 매우 불만족
7. 배달강좌에 참여하면서 배달강좌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?  
① 매우 만족    ② 만족    ③ 보통    ④ 불만족    ⑤ 매우 불만족
8. 배달강좌에 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?  
① 매우 그렇다    ② 그렇다    ③ 보통    ④ 아니다    ⑤ 매우 아니다
9. 참여하고 싶은 강좌나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.

10. 이 외에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.